

의안번호	2211769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4.
추 계 번호	25F329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양도차익에
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, 2027년 4.4억원, 2028년 4.4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8.8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누적	연평균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	-4.4	-4.4	-8.8	-4.4
계	-4.4	-4.4	-8.8	-4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제3항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)	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1조제3항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0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4.4억원
 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
 - 동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·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익금불산입하며, 이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

- 다만,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·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- 2020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4.4억원
- 소득세의 경우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음

[표 2]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
계	3	2	5	7	5
법인세	3	2	5	7	5
소득세	-	-	-	-	-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- (추계방법) 최근 5년(2020~2024년) 연평균 감면실적(4.4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
- 소득세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
- (추계결과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4.4억원, 2028년 4.4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8.8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누적	연평균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	-4.4	-4.4	-8.8	-4.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